남양주시 공고 제2026 - 1860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남 양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8. 25.(화) ~ 2026. 9. 1.(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 사 업 내 역 |
|---|
| **1) 사 업 명:**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br>**2)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 대표자 강영욱 (☎02-447-2285)<br>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B동 7,8층<br>**3) 시 공 자:** 일신건영㈜ 대표자 조태성 (☎02-480-3192)<br>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 (의정부동)<br>**4) 설 계 자:** ㈜기안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종천 (☎02-3461-2595)<br>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4 7층<br>**5) 사업개요**<br>○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산73번지 외 158필지<br>○ 대지면적: 95,894.00㎡<br>○ 연 면 적: 362,327.80㎡<br>○ 규 모: 지하4층 / 지상39층, 공동주택(아파트) 1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br>○ 세 대 수: 공동주택(아파트) 2,562세대<br>○ 공사기간: 2026. 11. 30. ~ 2030. 10. 30.(착공 후 47개월)<br>○ 사업계획승인일: 2023. 2. 3.<br>**6) 사 업 비**<br>○ 총사업비: 1,317,482,000천원<br>○ 대 지 비: 261,835,000천원<br>○ 총공사비: 569,941,000천원(일반관리비 및 이윤포함, 부가가치세 미포함)<br>가) 감리대상 공사비: 476,024,000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br>나)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93,917,000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br>※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전기, 소방설비, 정보통신공사의 비용임.<br>※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br>**7) 감리대가:** 10,662,937,6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일원단위 미만 절사)**<br>※ 건축감리대상공사비의 2.24% 적용<br>**8) 기초금액:** 10,343,049,480원(감리대가기준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

## 3. 주요 공정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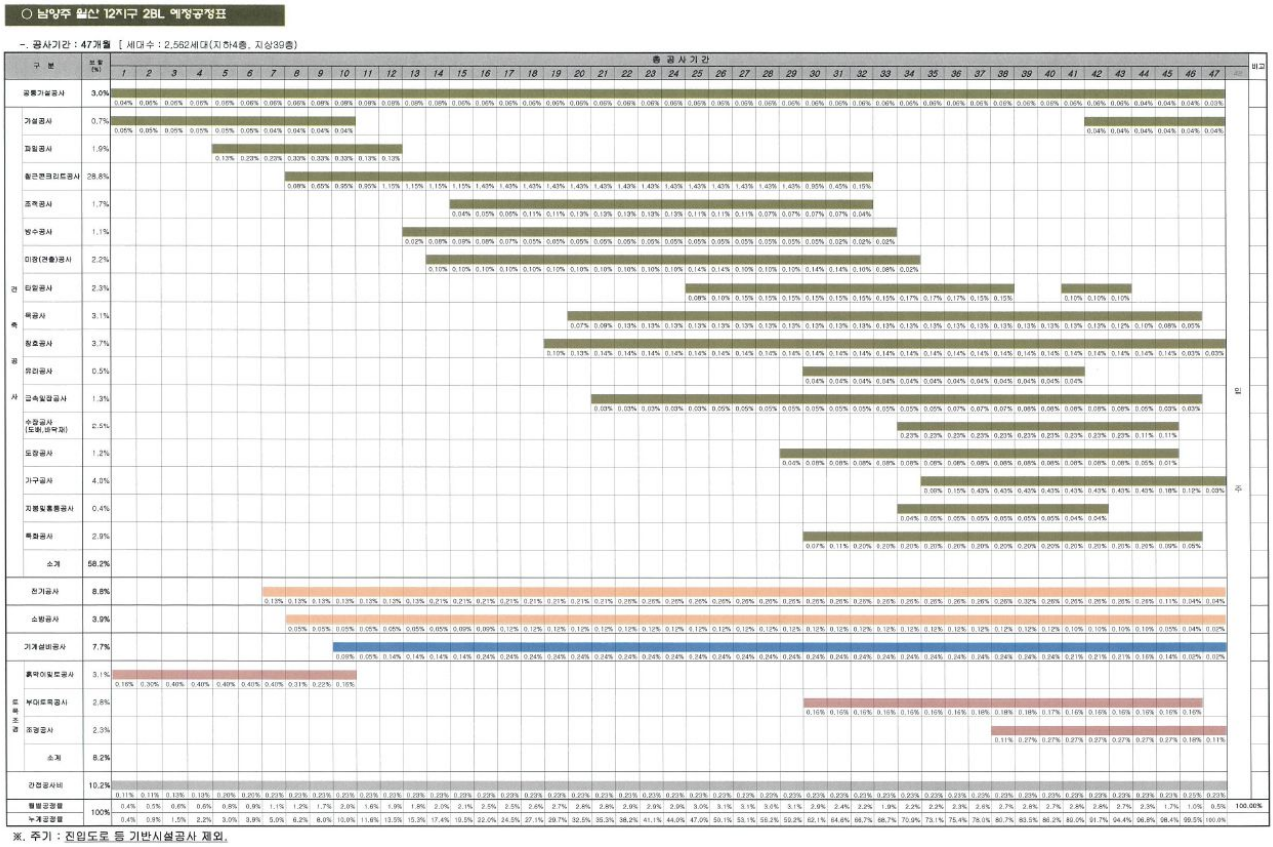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면접접수

**가. 일시:** 2026. 9. 2.(수) 09:00 ~ 2026. 9. 2.(수) 18:00

**나. 장소:**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

**다. 제출서류** **(방문접수만 가능, 대리인접수 가능)**

1) 총괄감리원 면접신청서[별첨 6 서식] 1부.
2)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출력본 및 [별첨 7 서식]) 1부.
3) 감리자(회사) 자격서류[11.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가. 감리자 응모자격) 관련]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총괄감리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대표업체만 제출)
5)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면접용) 1부(성명, 나이, 주소, 학력, 현 근무처 삭제)

※ 제출 시 표지는 '남양주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감리 면접접수, (회사명)○○, (총괄감리원 성명)△△△'으로 통일합니다. 회사명은 공식명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필히 기재 요망(면접 당일 연락 가능한 연락처로 기재할 것)

**라. 면접순서:** 면접 접수 순으로 그룹(A, B, …)을 정합니다. 알파벳 그룹 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하되, **면접 당일 대기장소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그룹 내 면접 순서를 정하여 진행합니다.

※ 접수확인 및 면접그룹 등 안내는 **2026. 9. 2.(수) 18:00 이후**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예:"남양주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총괄감리원 면접신청 접수되었으며, 면접일은 00월 00일 / 오전 or 오후 00:00, [A~E]면접 그룹 중 [A]그룹입니다")

**마. 유의사항**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제9조에 따른 면접을 진행합니다.
2) 접수 유효기간은 2026. 9. 2.(수) 18:00까지입니다. **직접 방문(우편 및 팩스 접수는 불가)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안에 접수장 내 입실한 신청인까지만 접수를 받으니 시간을 절대 엄수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3) 접수하는 자는 접수대장에 기재사항을 기재 후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위임받은 자가 접수 시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을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면접 대상 총괄감리원은 전자입찰 시 제출하는 응모서류 중 감리자지정 신청서 상 감리자가 배치하는 총괄감리원과 일치(불일치 시 실격 처리)하여야 하며, 면접에 참여하는 감리자 및 총괄감리원은 11.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상의 응모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착오로 잘못 접수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인(신청 대리인)에게 있으며, 도면 열람은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 5. 면접

**가. 일시: 2026. 9. 4.(금) 09:00 ~ 18:00**

**나. 장소**

- 대기: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남양주시 사능리 92-1) 3층 대강당
- 면접: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남양주시 사능리 92-1) 3층 제1교육장

**다. 유의사항**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따른 면접으로 심사위원이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나이, 주소, 학력, 현 근무처 등)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며, **면접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2) 추첨을 위해 **면접 시작 20분 전까지 대기실로 입장**하여야 합니다.
3) 면접 시작 시까지 미도착 시 "실격 처리" 합니다.
4)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이메일)할 예정입니다.
5) 면접 접수 및 면접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6. 면접결과

**가. 일시: 2026. 9. 5.(토) 13:00 ~**

**나. 방법:** 면접접수 시 작성한 e-mail로 개별 통지(예:"면접번호 00번 면접결과 '수(3점)'입니다")

**※ 면접결과 통지 일시 이전, 결과 관련 전화상담은 일절 금지합니다.**

## 7. 입찰서 제출

**가. 일시: 2026. 9. 7.(월) 10:00 ~ 2026. 9. 9.(수) 10: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6.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실격처리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평가서에는 면접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16.가의 서류) 미첨부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기초금액기준 상위개수를 7개로 함

7)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나라장터「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8. 개찰

**가. 일시: 2026. 9. 9.(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나.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다. 유의사항**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남양주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는 별첨 [참고자료 2]를 참조하시기 바람.**

## 9. 사실확인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2026. 9. 10.(목) 09:00 ~ 2026. 9. 14.(월) 17:00까지**
**나. 장 소: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되는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선정에서 제외함.**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 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10.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 9. 15.(화) 09:00 ~ 2026. 9. 17.(목) 17:00까지**
**나. 장 소: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 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열람은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방문열람(사진 촬영 불가)에

한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요망 /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2) 반드시 서면(열람대상 업체 및 열람대상 항목 기재된 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 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소명 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불가능)

5)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하고,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11. 응모 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 시점

**가. 감리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 감리원**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 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 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공고일 포함)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용역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일 것)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월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시 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 상기사항 외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공동도급)를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입력 유의사항**

①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같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②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 **건설사업관리(4969)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3.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총괄감리원에 대한 면접 실시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조회 및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9호, 2024. 10. 8.)」 제10조에 따릅니다.

④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⑤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선 순위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업체의 세부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⑦ 만약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14.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합산 벌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 시공자 "일신건영㈜"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합산 벌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 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음.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 벌점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 15. 재무 상태 평가

**가. 평가:** 재무 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 16.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평가대상 감리원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인감 날인)

②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 1] (인감날인)

③ 감리원 배치계획표: [별첨 5] 참고하여 작성·제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① 감리자 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및 뒷면 ①~⑯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9호, 2024. 10. 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서류에 해당 부분을 음영, 색상 등으로 표기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출.

②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③ 재무상태 건실도: 신용등급평가확인서

④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 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협회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 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⑤ 행정제재 여부 증명: 모집공고일을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해임, 사임, 이동 포함)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의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필요.(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도 제출)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 처리함.

⑥ 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 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 업체에 한함.

⑦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 신기술, 특허)

- 특허증·특허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 및 재무 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⑧ 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 시 포함)

⑨ 업무중첩도 관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⑩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

※ 다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 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 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 건수에 포함함.

⑪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총괄감리원 서명·날인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⑫ 확인서: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⑬ 감리원 관련(비평가 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 자격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 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 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 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확인서

⑭ 기타 증빙자료: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다. 유의사항**

①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 학력 증명서, 교육훈련 증명서 사본, 재무 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 감리원(건축, 토목, 기타설비), 비상주 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의 기술 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 시 실격 처리합니다.**

④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⑤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해당 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 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 서류의 허위기재: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⑥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⑦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7.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②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④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⑤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 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 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을 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 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 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 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상주 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②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건축, 토목, 설비분야 순서로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를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마지막 1인에 한하여 부분 배치 가능함.(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함)

※ 평가대상(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추가감리원이 배치될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 (건축, 토목, 기타설비) 구분없이 배치 가능.

③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 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비상주 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분야별 감리원(②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 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④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와 후반기(1차 배치 이후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며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인·월수에 포함합니다.

⑥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간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표에 명시된 동급의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⑦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별 임금 중 중급 건설기술인의 임금을 1로 하여 환산비를 정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 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 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으로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서 제외함. 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 기간 만료 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의 교육 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①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 등의 공사분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문의 사실 확인서류 제출 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③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④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⑤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⑥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차.**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포함)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감리자 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9호, 2024. 10. 8.)」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의합니다.

**너.**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으로 배치되면 실격처리 됩니다.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불가)

**러.** 감리자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 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감리 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 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남양주시 홈페이지(입찰공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031-590-27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 |
|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 9. .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명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 사업주체 | 상 호 | | 대표자 | |
|---|---|---|---|---|

| 사업계획 내용 | 위 치 | | | 대지면적 | ㎡ |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준공일 |
| | | 층, 동, 세대 | ㎡ | | |

| 설 계 자 | 성 명 | | 상 호 | |
|---|---|---|---|---|
| | 주 소 | | | |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 상 호 | | 대 표 자 | |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 |
|---|---|---|---|---|---|
| | | | | | |

| 주 소 | | 용역참여 지 분 율 | % | 전화번호 | |
|---|---|---|---|---|---|
| | | | % | |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 구분 | 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등급 | 자격번호 | 소속회사 |
|---|---|---|---|---|---|---|
| 총 괄 | | | | | | |
| 분야별 | | | | | | |
| 분야별 | | | | | | |
| 분야별 | | | | | | |
| 비상주 | | | | | | |
| 신규(1) | | | | | | |
| 신규(2) | | | | | | |
| 신규(3) | | | | | | |
| 신규(4) | | | | | | |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 유의사항 |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
|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

210㎜×297㎜[백상지(80g/㎡)]

| | | | |
|---|---|---|---|
| 사실확인 서류 | 감리자(회사) | ①재무상태 건실도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
| | | ③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 | | ④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 | |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
| | | ⑥감리원배치계획 |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
| | | ⑦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
| | | ⑧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
| | |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
| | |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
| | | ⑪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
| | 감리원 | ⑫자격증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
| | | ⑬학력증명서 |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
| | | ⑭경력증명서 |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
| | | ⑮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 | | ⑯교육이수 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297㎜[백상지(80g/㎡)]

# Ⅰ. 총괄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 자 기 평 가 서

| 구분 | 평 가 항 목 | | | 점수 기준 | 평점 신청자 | 평점 지정권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감리자 (감리 회사) | 재무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 5 | | |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
|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 | 12 | | | 예) 100(억원) |
| | 행정제재 | | | 9 | |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 2 | | | 예) 특허 0건 |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 2.5 | | | 예) 00(%) |
| | | 교육훈련 | | 0.5 | | |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
| | 신규감리원배치 | | | 2 | | | 예) 건축 0명 |
| | 교체빈도 | | | 7 | | | 예) 00(%) |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 (1) | | |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
| | | 지역가점 | | (1) | | | 예) 00도(道), 00개월 |
| | | 설계용역수행가점 | | (1) | | | 예) 현상 00(점) |
| | 계 | | | 40 | | |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 적・부 | | |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
| | | 업무중첩도 | | 적・부 | | | 예) 중복배치 없음 |
| |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 적・부 | | |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
| 감리원 | 총괄감리원 | 등급 | | 6 | | | 예) 특급건설기술자 |
| | | 경력 및 실적 | | 18 (15) | | |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 | | 면접(발표) | | (3) | | |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 3 | | | |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 | 예) 건축사, 00기술사 |
| | | 감점 | 행정제재 | (-2) | |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 | 교체빈도 | (-1) | | | 예) 00(건) |
| | | 소 계 | | 27 | | | |
| | 분야별감리원 | 등급 | 건축 | 2 | | | 예) 특급건설기술자 |
| | | | 토목 | 2 | | | 예) 고급건설기술자 |
| | | | 기타설비 | 2 | | | 예) 고급건설기술자 |
| |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 | 예) 00(년) |
| | | | 토목 | 7 | | | 예) 00(년) |
| | | | 기타설비 | 7 | | | |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 | 예) 건축사, 00기술사 |
| | | | 토목 | (0.1) | | | |
| | | | 기타설비 | (0.1) | | | |
| | | 감점 행정제재 | 건축 | (-1) | |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 | 토목 | (-1) | | | |
| | | | 기타설비 | (-1) | | | |
| | | 감점 교체빈도 | 건축 | (-0.5) | | | 예) 00(건) |
| | | | 토목 | (-0.5) | | | |
| | | | 기타설비 | (-0.5) | | | |
| | | 소 계 | | 27 | | | |
| | 비상주감리원 | 등급 | | 2 | | |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
| | | 경력 및 실적 | | 4 | | | 예) 00(년) |
| | | 감점 | 행정제재 | (-1) | | | 예) 업무정지 00(월) |
| | | | 교체빈도 | (-1) | | | 예) 00(건) |
| | | 소 계 | | 6 | | | |
| | 계 | | | 60 | | | |
| 총 계 | | | | 100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3개 업체에 한함)

### 가. 감리자(감리회사)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 계</td><td>40</td><td>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td><td></td><td></td></tr>
<tr><td>(1) 재무상태 건실도</td><td>5</td><td>○ 평가 및 산정방법<br><br>-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br><br>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br><br>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br><br>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br><br>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br><br>- 배점기준
<table>
<tr><th>점수</th><th>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th><th>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th><th>기업 신용평가등급</th></tr>
<tr><td rowspan="5">5.0</td><td>AAA</td><td>–</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A^{+}$, $AA^{0}$, $AA^{-}$</td><td>A1</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0}$</td><td>$A2^{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 rowspan="3">4.2</td><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B^{0}$</td><td>$A3^{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tr>
</table></td><td></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td><td></td><td>
<table>
<tr><td rowspan="3">3.4</td><td>$BB^+$, $BB^0$</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td><td>$B^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 $B^0$, $B^-$</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2.6</td><td>$CCC^+$ 이하</td><td>C 이하</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tr>
</table>
</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td></tr>
<tr><td>(2) 감리업무 수행실적</td><td>12</td><td>○ 평가 및 산정방법<br><br>-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br><br>·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br><br>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br>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br>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 [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br>*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br>= 1,750,684,931(원)<br>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br>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br>*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br>= 1,599,452,054(원)<br><br>·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br><br>※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br><br>-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td><td></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td><td></td><td>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table>
<tr><th>공사규모</th><th colspan="5">기준금액 및 배점</th></tr>
<tr><td>1,500세대 이상</td><td>350이상</td><td>350미만<br>250이상</td><td>250미만<br>150이상</td><td>150미만<br>70이상</td><td>70미만</td></tr>
<tr><td>1,500세대 미만<br>1,000세대 이상</td><td>250이상</td><td>250미만<br>150이상</td><td>150미만<br>70이상</td><td>70미만<br>50이상</td><td>50미만</td></tr>
<tr><td>1,000세대 미만<br>800세대 이상</td><td>150이상</td><td>150미만<br>70이상</td><td>70미만<br>50이상</td><td>50미만<br>30이상</td><td>30미만</td></tr>
<tr><td>800세대 미만<br>500세대 이상</td><td>70이상</td><td>70미만<br>50이상</td><td>50미만<br>30이상</td><td>30미만<br>10이상</td><td>10미만</td></tr>
<tr><td>500세대 미만<br>300세대 이상</td><td>50이상</td><td>50미만<br>30이상</td><td>30미만<br>10이상</td><td>10미만<br>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세대 미만</td><td>10이상</td><td>10미만<br>7이상</td><td>7미만<br>5이상</td><td>5미만<br>3이상</td><td>3미만</td></tr>
<tr><td>배 점</td><td>12</td><td>10.8</td><td>9.6</td><td>8.4</td><td>7.2</td></tr>
</table>

</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4">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2</td></tr>
<tr><td>(3) 행정제재</td><td>9</td><td>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br>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br>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td><td></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td><td></td><td>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br><br>·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br><br>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br><br>·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br><br>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td><td></td><td></td></tr>
<tr><td>(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td><td>5</td><td>○ 평가 및 산정방법<br><br>-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td><td></td><td></td></tr>
<tr><td></td><td></td><td>●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br><br>-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br><br>※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br><br>-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br><br>-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br><br><table><tr><td>구 분</td><td>3년 미만</td><td>3년 이상<br>6년 미만</td><td>6년 이상<br>10년 미만</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able><br>-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 · 건축 · 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td><td></td><td></td></tr>
<tr><td></td><td></td><td>●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td><td></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매출액)에 따라 부여<br><br>-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br>-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br><br>-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br><br>- 배점기준<br>
<table>
<tr><td>구분</td><td>1.5% 이상</td><td>1.50% 미만<br>1.25% 이상</td><td>1.25% 미만<br>1.0% 이상</td><td>1.00% 미만<br>0.75% 이상</td><td>0.75% 미만<br>0.50% 이상</td></tr>
<tr><td>점수</td><td>2.5</td><td>2.0</td><td>1.5</td><td>1.0</td><td>0.5</td></tr>
</table>
</td><td></td><td></td></tr>
<tr><td>● 교육 훈련(0.5점)<br><br>-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br><br>·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br><br>·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td><td></td><td></td></tr>
<tr><td rowspan="4">산출근거</td><td colspan="3">- 건설기술개발실적 :</td></tr>
<tr><td colspan="3">-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td></tr>
<tr><td rowspan="2">- 교육훈련</td><td colspan="2">(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td></tr>
<tr><td colspan="2">(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td></tr>
<tr><td>(5) 신규 감리원 배치</td><td>2</td><td>○ 평가 및 산정방법<br><br>-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br><br>·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td><td></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td><td></td><td>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table>
<tr><th>구분</th><th>1,000세대 미만</th><th>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th><th>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h><th>2,000세대 이상</th></tr>
<tr><td>0명</td><td>2.0점</td><td>0점</td><td>0점</td><td>0점</td></tr>
<tr><td>1명</td><td>2.0점</td><td>1.5점</td><td>1.0점</td><td>0점</td></tr>
<tr><td>2명</td><td>2.0점</td><td>2.0점</td><td>1.5점</td><td>1.0점</td></tr>
<tr><td>3명</td><td>2.0점</td><td>2.0점</td><td>2.0점</td><td>1.5점</td></tr>
<tr><td>4명이상</td><td>2.0점</td><td>2.0점</td><td>2.0점</td><td>2.0점</td></tr>
</table>

</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td><td></td><td></td></tr>
<tr><td>(6) 교체 빈도</td><td>7</td><td>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text{교체빈도율(\%)}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table>
<tr><th>비율</th><th>5%미만</th><th>5%이상 10%미만</th><th>10%이상 15%미만</th><th>15%이상 20%미만</th><th>20% 이상</th></tr>
<tr><td>배점</td><td>7</td><td>5</td><td>3</td><td>1</td><td>0</td></tr>
</table>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td><td></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td><td></td><td>각각 산정한다.<br><br>※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7) 가점</td><td>(3)</td><td>○ 평가 및 산정방법</td><td></td><td></td></tr>
<tr><td>(1)<br>감리원<br>추가<br>배치,<br>총괄<br>감리원<br>등급<br>상향</td><td>-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br><br>- 평가방법<br><table><tr><th>구분</th><th>300세대 이상<br>1,000세대미만</th><th>1,000세대 이상<br>2,000세대 미만</th><th>2,000세대<br>이상</th></tr><tr><td>1명</td><td>1.0점</td><td>0.7점</td><td>0.5점</td></tr><tr><td>2명</td><td>1.0점</td><td>1.0점</td><td>0.7점</td></tr><tr><td>3명 이상</td><td>1.0점</td><td>1.0점</td><td>1.0점</td></tr></table>※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br><br>-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td><td></td><td></td></tr>
<tr><td>(1)<br>지역<br>가점</td><td>-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br><br>- 배점기준<br><table><tr><th>배점</th><th>주택건설지역</th></tr><tr><td>1</td><td>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td></tr></table></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5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이므로 지역가점 해당없음</td><td></td><td></td></tr>
<tr><td>(1)<br>설계<br>용역<br>수행<br>가점</td><td>-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br><br>・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br><br>・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td><td></td><td></td></tr>
</table>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br><br>-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br><br>·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br><br>·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 | |
| | 산출근거 | | | |
| (8) 적격여부 | (적 · 부) | (적 : 적합, 부 : 부적합) | | |
| | (적 · 부)<br>감리원<br>배치<br>계획 | ○ **평가방법**<br><br>-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br><br>·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 「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 · 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 · 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 · 월수는 총배치 인 · 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br><br>·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br><br>·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 · 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br><br>·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br><br>·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br><br>·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 |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 | 산출근거 | | | |
| | (적・부) 업무 중첩도 | ○ **평가방법**<br><br>-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br><br>-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br><br>-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 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br><br>※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
| | 산출근거 | | | |
| | (적・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 **평가대상**<br><br>-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br><br>・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br><br>※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아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타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br>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br><br>・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 |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 rowspan="2"></td><td></td><td>○ 평가방법<br><br>-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br><br>※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br><br>- 평가방법<br><br>
<table>
<tr><td>구분</td><td>300세대 이상<br>1,000세대 미만</td><td>1,000세대 이상<br>2,000세대 미만</td><td>2,000세대 이상</td></tr>
<tr><td>추가인원</td><td>1명</td><td>2명</td><td>3명</td></tr>
</table>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3">본 건에 대하여 해당없음</td></tr>
</table>

## 나. 감 리 원

**(1) 총괄감리원**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 계</td><td>27</td><td>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td><td></td><td></td></tr>
<tr><td>(가) 등급</td><td>6</td><td>○ 평가 및 산정방법<br><b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br><br>-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td><td></td><td></td></tr>
</table>

| | | | | |
|---|---|---|---|---|
| | | ·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br>·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 |
| 산출근거 | | - 등급 : | | |
| (나) 경력 및 실적 | 18<br>(15) | ○ **평가 및 산정방법**<br><br>< 기본자격요건 ><br><br>- 주택건설공사 감리 ·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br><br>※ "주택건설공사 감리 ·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br><br>< 배점기준 적용 ><br><br>- 건축분야 감리원<br><br>·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br><br>·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 · 설계 ·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br><br>·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 · 설계 ·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br><br>- 공무원 등<br><br>·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br><br>·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br><br>·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br><br>·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br><br>※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 |

- 배점기준

| 배점 | 18<br>(15) | 16.5<br>(13.5) | 15<br>(12) | 13.5<br>(10.5) |
|---|---|---|---|---|
| 1천세대 이상 | 12년 이상 | 12년 미만<br>10년 이상 | 10년 미만<br>8년 이상 | 8년 미만 |
| 1천세대 미만 | 10년 이상 | 10년 미만<br>8년 이상 | 8년 미만<br>6년 이상 | 6년 미만 |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산출근거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3)

- 면접(발표)

· 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교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배점 | 3 | 2.7 | 2.4 | 2.1 | 1.8 |

산출근거

(다)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3

○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 · 날인)한 경우 : 3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 · 오류 · 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 구 분 | 500 미만 | 500 이상<br>1,500 미만 | 1500 이상<br>2,500 미만 | 2,500 이상 |
|---|---|---|---|---|
| 쪽 수 | 15쪽 이상 | 20쪽 이상 | 25쪽 이상 | 30쪽 이상 |
| 부 문<br>(내 용) | 1. 사업 개요<br>2. 감리업무 ·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br>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br>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산출근거

| | | | | |
|---|---|---|---|---|
| (라) 자격 가점 | (0.2) | ○ **평가 및 산정방법**<br><br>- 자격배점 : 0.2점<br><br>·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br><br>※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 산출근거 | | | | |
| (마) 감점 | (-3.0) | ○ **평가 및 산정방법**<br><br>-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 | (-2)<br>행정<br>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br><br>·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br><br>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br><br>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br><br>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br><br>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 | |
| | 산출근거 | | | |
| | (-1)<br>교체<br>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br><br>-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br><br>※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 | 산출근거 | | | |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 주택건설공사 규모 | 평가대상 감리원수 | 분야별 감리원수 | 비 고 |
|---|---|---|---|
| 300세대 미만 | 2명 | 토목 1명, 설비 1명 |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명 |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4명 |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 5명 |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3,000세대 이상 | 6명 |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소 계 | 9 |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 | |
| (가) 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br><b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br><br>- 등급배점기준(2점) | | |

| 공사규모 | 점 수 | | |
|---|---|---|---|
| 1천세대 이상 | 특급건설기술자 | 고급건설기술자 | 중급건설기술자 |
| | 2 | 1.8 | 1.6 |
|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중급건설기술자 | |
| | 2 | 1.8 | |
| 300세대 미만 |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 | |
| | 2 | | |

| | |
|---|---|
| 산출근거 | - 건축 등급 :<br>- 토목 등급 :<br>- 설비 등급 : |

| | | | | |
|---|---|---|---|---|
| (나) 경력 및 실적 | 7 |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br><br>< 기본자격요건 > | | |

| | | | | |
|---|---|---|---|---|
| |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 ·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br><br>※ "주택건설공사 감리 ·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해당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br><br>- 건축분야 감리원<br><br>·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br><br>·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 · 설계 · 시공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br><br>·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 · 설계 ·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br><br>- 토목분야 감리원<br><br>·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br><br>·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 · 설계 ·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br><br>·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 · 설계 ·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br><br>·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 · 설계 ·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br><br>- 설비분야 감리원<br><br>·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br><br>·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 · 설계 · 시공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 |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 · 설계 ·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 · 설계 ·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 · 토목 · 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 · 토목 · 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table>
<tr><td>공사규모</td><td colspan="4">점 수</td></tr>
<tr><td rowspan="2">1천세대 이상</td><td>10년 이상</td><td>10년 미만<br>8년 이상</td><td>8년 미만<br>6년 이상</td><td>6년 미만</td></tr>
<tr><td>7</td><td>6.3</td><td>5.6</td><td>4.9</td></tr>
<tr><td rowspan="2">1천세대 미만<br>300세대 이상</td><td colspan="2">6년 이상</td><td>6년 미만<br>2년 이상</td><td>2년 미만</td></tr>
<tr><td colspan="2">7</td><td>6.3</td><td>5.6</td></tr>
<tr><td rowspan="2">300세대 미만</td><td colspan="2">2년 이상</td><td colspan="2">2년 미만</td></tr>
<tr><td colspan="2">7</td><td colspan="2">6.3</td></tr>
</table>

| 산출근거 | |
|---|---|
| | - 건축 : 일 (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 토목 : 일 (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 설비 : 일 (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 |
|---|---|---|
| (다) 자격가점 | (0.1) | ○ **평가 및 산정방법**<br><br>- 자격배점 : 0.1점<br><br>·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 | | | | |
|---|---|---|---|---|
| | |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 산출근거 | | | | |
| (라) 감점 | (-1.5) | ○ **평가 및 산정방법**<br><br>-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 | (-1)<br>행정<br>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br><br>·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br><br>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br><br>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 | |
| | 산출근거 | -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합산벌점 : (월) | | |
| | | -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합산벌점 : (월) | | |
| | | -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합산벌점 : (월) | | |
| | (-0.5)<br>교체<br>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br><br>-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br><br>※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 | 산출근거 | - 건축 : | | |
| | | - 토목 : | | |
| | | - 설비 : | | |

**(3) 비상주감리원**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 | | 신청자 | 지정 권자 |
| **소 계** | **6**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 | |
| (가) 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b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br>- 등급배점기준<br>·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br>·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br>·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 |
| 산출근거 | | - 등급 : | | |
| (나) 경력 및 실적 | 4 | ○ **평가 및 산정방법**<br>- 건축분야 감리원<br>·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br>·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 · 설계 · 시공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br>·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 · 설계 ·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br>- 공무원 등<br>·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br>·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br>·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br>·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br>※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 |

- 배점기준

| 경 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br>5년 이상 | 5년 미만 |
|---|---|---|---|
| 배 점 | 4점 | 2.5점 | 1점 |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 산출근거 | 일 (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 | | | |
|---|---|---|---|---|
| (다) 감점 | (-2) | ○ **평가 및 산정방법**<br><br>-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 | (-1)<br>행정<br>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br><br>·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br><br>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br><br>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 |
| | 산출근거 | - 영업정지기간 등 : (월)<br><br>- 합산벌점 : (월) | | |
| | (-1)<br>교체<br>빈도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br><br>※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 | 산출근거 | | | |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 확 인 서

1. 공사개요

| | | | | | |
|---|---|---|---|---|---|
| 사업주체 | 상 호 | | 대 표 자 | | |

| | | | | | |
|---|---|---|---|---|---|
| 사업계획 내 용 | 위 치 | | | 대지면적 | ㎡ |
| | 사 업 내 용 | 공 사 명 | | 사업승인일 | |
| | | 규 모 | 층, 동, 세대 | 착공(예정)일 | |
| | | 연 면 적 | ㎡ | 준공(예정)일 | |
| | | 사업승인번호 | | | |

2. 감리자(감리회사)

| | | | | | |
|---|---|---|---|---|---|
| 상 호 | | 대 표 자 | |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 |

| | |
|---|---|
| 주 소 | |

| | | |
|---|---|---|
| 공동도급 비 율 | (%)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 | (%) |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분 야 | 감리원 등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나. 확인요청사항

| 확인요청 사항 | 확 인(√) |
|---|---|
|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 |
|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 |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장**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첨 1]

#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거나,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 등)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세부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별첨 2] **(우선순위 3개 업체)**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 연번 | 용 역 명 | 감리기간 | | 수주금액(억원) | | 적용요율(%) | | 환산금액(억원) |
|---|---|---|---|---|---|---|---|---|
| | | 착수일 | 완료(예정)일 | 주택건설공사 | 건축공사 | 환산비율 | 공사종류요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별첨 3] **(우선순위 3개 업체)**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구분 | 경력사항 | | 경력일수 | 환산비 | 평가환산일수 | 등급 | 평점 |
|---|---|---|---|---|---|---|---|
| | 사 업 명 | 기 간 | | | | | |
| 총괄감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일년 | | |
| 분야별감리원(3명) 및 비상주감리원(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일년 | | |

[별첨 4] **(우선순위 3개 업체)**

##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 감리원 성 명 | 분 야 | 등 급 자 격 | | | 신규감리원 자격 | | 평 점 |
|---|---|---|---|---|---|---|---|
| | | 현재등급 | 자격명 (학력명) | 취득일 | 해당시점 (감리사보) | 해당시점 이후 경력및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 구 분 | 경 력 사 항 | | 경 력 일 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수 | 비 고 |
|---|---|---|---|---|---|---|
| | 사 업 명 | 기 간 | | | | |
| 신 규 감 리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일 년 | |

[별첨 5]

#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예시)

| 구분 | 분야 | 성명 | 등 급 | 투 입 기 간 | | | 개월 | 환산비 | 인월수 | 비고 |
|---|---|---|---|---|---|---|---|---|---|---|
| | | | | ○○○○년 | ○○○○년 | ○○○○년 | | | | |
| 총괄 | 건축 | ○○○ | | | | | | | | |
| 분야별 | 건축 | ○○○ | | | | | | | | |
| | 토목 | ○○○ | 특급 | | | | | | | 전반기 |
| | | ○○○ | 특급 | | | | | | | 후반기 |
| | 설비 | ○○○ | | | | | | | | |
| 비상주 | 건축 | ○○○ | | | | | | | | 15%이내 |
| | ○○ | ○○○ | | | | | | | | |
| 신규 | 건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평가 | 건축 | ○○○ | | | | | | | | |
| | 설비 | ○○○ | | | | | | | | |
| |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배치 | 건축 | ○○○ | | | | | | | - | 구조체 공사배치 |
| | 건축 | ○○○ | | | | | | | - | 구조체 공사배치 |
| 총배치 인월수 | | | | | | | | | | |

※ 감리대상공사비 :

- 법 정 인.월 수 : 인.월
- 투 입 인.월 수 : 인.월
- 비상주감리원 인 · 월수(배치율) : 인.월 ( %)

※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을 제출하여도 되나 상기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별첨 6]

# 총괄감리원 면접신청서

○ 사　업　명 :　　남양주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회　사　명 :

○ 총괄감리원 성명 :　　○ 생년월일 :

○ 총괄감리원 연락처 :　1)

2)　　(비상연락처)

○ 총괄감리원 e-mail :

○ 신 청 일 자 :　　0000년　00월　00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와 이메일은 면접대기실 입장안내 및 결과통보에 활용되므로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남양주시장 귀하

[별첨 7]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참고자료 1】

#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 2】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 | 낙찰하한율 |
|---|---|---|---|---|---|
| | | 배점 | 산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
| 300세대 미만 | 40 | 60 |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45 | 84.95%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 | 50 |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35 | 82.95% |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60 | 40 | **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25 | 80.45% |
| 1,000세대 이상 | 70 | 30 |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15 | 72.95% |